

水産業協同組合의 營利性에 關한 一考察

—經營主体觀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Profitability in the Fisheries Cooperative
—Chiefly on the viewpoint of business entity—

朴 台 洙
Tae Soo Park

目 次

- I. 序 言
- II. 從來의 協同組合觀
- III. 水産業協同組合經營의 特質
- IV. 協同組合의 營利性
 - 1. 收益認定稅
 - 2. 經營主体觀
- V. 結 言

I. 序 言

水産業協同組合은 經濟的 弱者인 漁民과 水産製造業者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을 爲한 自己防圍의 組織으로서 一種의 生産者 協同組合이다. 다시 말하자면 水産業에 從事하는 獨立小生産者가 大資本 乃至 商人資本의 壓力으로 부터 自己를 保護하려고 하는 資本主義社會의 歷史的 產物로서 協同主義 奉仕主義에 依하여 共存 共榮을 꾀하고자 組織된 人的組織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를 外圍로 한 社會下에서의 經營學的觀點에서 보면 水協은 하나의 獨立된 個別資本의 運動體로서 「擴大된 經營單位」이고 그 自体의 統一意思下에서 計劃的 秩序的으로 組織된 自立的 經營實體로서 認識되므로 水協은 經營 그 自体의 論理에 依하여 運營될 것이 要請된다. 여기에서 「目的과 實體의 乖離」 乃至는 「組織과 經營의 矛盾」이라 불리워 지고 있으며 水協의 營理性 또는 企業性을 認定할 것인가 아닌가에 對해서 異論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水産業協同組合은 아직 그 發展段階에 있으며 龍大한 系通組織의 活用에도 不拘하고 「漁民을 爲한 組合」이 아니라 「組合을 爲한 漁民」 「漁民은 組合의 것」이란 비난성이 높아가고 있음은 經營의 不合理性에 基因한 것이라 生覺된다. 여기에서 水協經營合理化를 爲해서 먼저 組合의 性格을 再吟味해 보는 것도 결코 무의미 하지는 않을 것이다.

本小考에서는 主로 經營學的觀點에서 經營實體觀을 中心으로 水協의 營利性을 살펴 보코자 한다.

Ⅱ. 從來의 協同組合觀

協同組合의 本質은 組合員의 相互扶助의 協同精神에 基礎를 둔 人的結合체로서 協同의 經濟力에 依해서 組合員各者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과 生活改善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C. Guide는 協同組合을 「利潤을 撲滅하는 團體」라하였고 F. Tönnies는 社會를 利益社會(Gesellschaft)와 共同社會(Gemeinschaft)로 나누워 協同組合을 共同社會 속에 포함시키므로서 非營利團體로 規定하였고 G. Jacob는 「自助의 方法에 依해서 共同經營을 營爲함으로써 組合員의 營利 또는 經濟의 助成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組合員의 經濟助成團體로 規定하였으며 W. Sombart는 「資力이 不足한 經濟主体의 大經營構成에 依하여 그들의 經濟行使를 完全케 하는 것」이라 하여 組合自體의 利潤追求를 부정하고 協同組合을 「反資本主義的」 또는 「外資本主義的」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資本主義社會의 特性으로서 營利主義 個人主義(自由競爭) 專制主義 合理主義를 들고 이에 對하여 協同組合은 必要額充足原理 社會連帶主義 民主主義에 立脚하고 있으므로 資本主義外에 있는 것이라 하였고 協同組合이 發達하면 協同組合社會가 實現된다고 하였다.

結局 이러한 思想은 協同組合의 目的과 組織動機를 重視하여 協同組合은 本來 資本主義의 矛盾을 克服하고자 의식적 能動的으로 組織된 것이므로 宜當히 利潤追求를 排擊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思想的 源流는 「R. Owen」의 空想的 社會主義思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水産業協同組合도 獨立小生産者인 漁民과 水産製造業者의 自己防圍의 組織이며 組合員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과 水産業의 生産力增強을 目的으로 組織된 個別經濟體이다.

따라서 水協의 事業은 組合員의 事業經營을 助成하고 便益을 提供하는 것으로 水協自體의 營利性의 追求를 直接의 目的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組合員의 生活이나 事業에 便益을 주는 一種의 共同利用 施設이며 또한 組合員事業의 延長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共存共榮(each for all, all for each)의 指導原理에 依하여 組合員의 精神的 團結을 꾀하고 이를 通하여 資本主義經濟體制가 갖는 內在的 矛盾에 依한 弊害를 匡正하고 資本의 壓迫에서 부터 解放시킬려고 하는 것이다.

Ⅲ. 水協經營의 特質

上述한 바와 같이 協同組合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經濟的 弱者인 獨立小生産者가 資本制經營에 對抗하여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을 爲한 相互扶助의 組織이며 經營目的이 利潤追求가 아닌 入用充足의 非營利的 性格에 그 特質을 求하는 것이 從來의 一般的 見解였다.

水産業協同組合의 營利性에 關한 一考察

水産業協同組合은 「漁民과 水産製造業者의 協同組織을 促進하여 그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과 水産業의 生産力의 增強을 目的으로 (水協法 第1條)」 組織된 目的共同體로서 組合員의 經營과 別個의 經營單位로 機能하지 않는 組合員의 事業經營과 密接不可分의 有機的 關聯下에서 組合員의 經營에 規制되고 經營外的 要因에 크게 制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經營活動에 있어서도 이러한 組織目的의 反映으로 資本制的 企業經營과 相當히 特異한 性格을 갖게 된다.

一般的으로 水協은 協同運動體 經濟事業體 漁業權管理體로서의 性格을 가지나 本質的으로 是는 다음의 特徵을 들 수 있다.

- a. 出資者와 利用者의 同一性
- b. 組織動機의 自己防圍性
- c. 運營上의 諸技術 即 協同組合原則에 依한 運營
- d. 事業經營의 被制約性(組合員性格, 事業內容 等)
- e. 事業經營의 多樣性(販賣, 購買, 信用, 利用加工, 共濟事業 等)
- f. 組合規模의 零細性 等

그러나 組合經營이 利潤追求를 直接的 目的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個別資本의 運動體로서 消費經濟體가 아니라 生産經濟體이며 그 經營의 性質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오히려 보다 많은 資本主義的인 企業의 性質을 갖는다.¹⁾

協同組合은 資本主義發展의 歷史的 產物이며 資本主義社會를 背景으로 存續 發展해야 하므로 資本主義的 市場經濟機構를 벗어나서 存在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水協은 資本主義社會의 合法則性에 따라서 經營活動이 遂行되어야 하며 他 資本主義的 經營과의 競爭이 不可避하므로 이 競爭體制에서 存續發展하기 위해서는 經濟性 또는 經濟的 合理主義原則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水協經營이 資本制的 競爭體制下에서 獨立된 統一的 意思에 依해서 組織된 經營主體(Business Entity)로 認識되며 經營이

1) 協同組合의 企業의 性質로서는 다음 諸點을 들 수 있다.

- ① 經營組織에 있어 會社企業에 類似하다. 즉 法人格을 가지고 「自己의 이름으로」 「自己의 計算下에」 事業活動을 하므로 스스로 市場危險 나아가서는 資本危險을 부담한다.
- ② 企業과 同一한 財務手段을 採用하고 資本計算을 行한다. 즉 企業會計方式에 依해서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한다.
- ③ 剩餘金의 配分이 企業의 利益配當과 類似하다. 水協法141條에 依하여 剩餘金의 發生을 促進함으로써 資本蓄積의 場所가 되고 있고 또 出資配當을 우선 하고 있다.
- ④ 市場經濟에 있어 企業과 같은 利益追求를 하고 있다. 즉 自由競爭體制下에서 對外的으로 對等한 價格 경쟁을 통한 價格支配力을 높이며 한다.

張設鎬著：水産業協同組合經營論，亞人閣，1964，p.31~32

going concern²⁾으로서 永久的 維持發展을 前提로 해야 하므로 그 經營活動을 遂行함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的 能率的 科學的 管理法이 採用되어야 하고, 이러한 競爭을 通해서 經濟的弱者인 組合員에게 公正競爭의 機會를 주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水協 經營遂行에 있어서 資本維持와 危險負擔은 當然히 組合의 責任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營利原則에 支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經營收益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고 剩餘金의 發生을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이다. 現實의으로도 水協法 第141條에서는 每事業年度剩餘金의 1/10以上을 積立하도록 強制規定을 두고 있어 事業擴張 乃至 經營危險에 對處한 剩餘金의 發生을 促進하고 있다.

여하튼 水協은 하나의 獨立된 經營主体이며 協同組合의 經營은 組合員의 經濟에서 分離 獨立하여 自立하고 組合 그 自体로 存在하며, 그 自体의 資本의 運動으로서 展開되며 法律上에서도 水產業協同組合은 法人格을 가지고 會計單位를 形成하며 損益計算의 主体가 되고 있으므로 「고잉, 컨선」(going concern)으로서, 經營自体의 論理에 依해서 運營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組織과 經營의 矛盾」 「目的과 實体の 二律背反의 乖離 現狀」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

IV. 水產業協同組合의 營利性

1. 收益認定說

從來의 一般의 見解로서는 協同組合이란 그 組織 目的動機를 重視하여 非營利 奉仕主義가 그 本質이라 하였다.

그러나 協同組合은 資本主義經濟를 外圍로 하여 生成 發展하였고, 資本과 經營이 分離된 가운데 經營 그 自体의 論理에 依해서 經營活動이 遂行되고 하나의 經營主体로 認識되므로 經營收益을 認定해야 한다는 說이 있다.

K. Hildebrand는 「協同組合은 하나의 事業經營을 가지고 營利를 目的으로 해야만 하는 獨立의 企業이며…… 組合은 營利經營이 家計로 부터 分離하여 計算的으로 獨立한 것이며

2) J. R. Commons에 依하면 going concern은 「메카니즘」(mechanism)과 有機的인 (Organism) 要素를 그 가운데 包含하면서 이에 人間의 目的 意識과 그 目的에 妥當하도록 達成하려는 意思活動이 加해지는 것이라 規定하였다.

by J. R. Commons: Institutional Economics, p. 169

計算的 獨立은 이미 營利企業임을 뜻한다」¹⁾라 하여 計算的 獨立을 重視하고 組合이 「自己의 이름으로, 自己의 計算下에」 經營活動이 遂行되므로 市場危險 나아가서는 資本危險을 組合 스스로 負擔하고 資本計算의 主体가 되므로 企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Schmalenbach도 「하나의 成果를 達成하기 爲하여 經濟的 諸力이 投入되고 同時에 科學的 研究의 必要가 是認될 정도로 諸關係가 복잡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企業은 成立한다…… 資本의 運動으로서 價值순환의 過程이므로 計算이 前提가 되어야한다」²⁾라 하여 計算制度를 強調하였는데 그는 計算의 目的은 營利性에 있다고 規定하고 計算的으로 獨立한 協同組合의 非營利性을 否定하고 企業과 同一視하였다.

F. Leitner는 그의 個別經濟分類圖에서 明示된 바와 같이 個別經濟를 營利經濟와 消費經濟(政府도 包含)로 大別하고 營利經濟를 收益性原理에 立脚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하고 여기에 收益經濟的인 企業的 經濟와 同時에 協同組合을 포함시키고 있다.³⁾

日本の 近藤康男 教授는 協同組合을 「拘束된 商企業」 또는 「商業資本의 特殊한 企業形態의 하나……」라 하여⁴⁾ 特殊企業의 一種으로 規定하였는데 이는 協同組合이 「資本主義體制內에서 資本主義經濟와 相互補完的 競爭關係를 維持하면서」 「協同組合은 商業利潤을 排除하나 그 排除한 만큼 自己利潤으로서 追求」⁵⁾ 하는 것이지만 株式會社와 같이 利潤追求를 第一義的인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組合員들의 消費 및 生産面에 있어 直接 필요한 『施設』로 認識하고 있는 結果라 하겠다.

山本辰義 教授도 「個別資本으로서의 漁協은 資本主義社會의 利潤原理에서 分離하여 存在할 수는 없다…… 여하튼 漁協은 一個의 獨立한 企業이고 漁協 經營은 組合員의 經濟에서 自立하여 그 自体의 資本의 運動으로서 展開된다」⁶⁾ 라 하여 「目的과 經營의 分離」를 주장하며 經營實體面에서는 分明히 營利企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趙東弼 교수도 이점에 關해서 協同組合의 非營利性은 「組合經營의 合法性에서 볼 때 非現實的인 것이다. 組合經營은 獨立된 目的과 意思와 組織이 있는 獨立經營體로서 그 社會의 餘他 經營組織體와의 競爭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쟁을 通해서만 組合員에게 現實的인 經濟的 利得을 가져올 수 있다」⁷⁾ 라 하여 經營實體面을 중시하고 協同組合을 營利團體의 하나로 認識하고 있다. 이점 日本의 「長原鐵腸」氏도 同旨임이 分明한데

1) K. Hildebrand; Die Betriebswirtschaftlichen Grundlagen der Genossenschaftlichen Unternehmung, vorwort, U. S. 12

2) 尹炳旭著; 經營學 全書 2권 歐美經營學의 發展과 理論, 高大 企業 研究所, 1963, p180

3) 尹炳旭著; 前掲書, p245

4) 近藤康男 著; 協同組合의 理論, p22

5) 宋種福著; 協同組合論, p23~25

6) 山本辰義著; 漁協簿記會計精說, p3

7) 趙東弼·李壽山 共著; 入門農業協同組合論, p165

수 산 경 영 론 집

그는 協同組合의 企業性에 關한 考察이라는 論文에서 企業 概念속에 協同組合도 포함된다 고 하였다.⁸⁾

이와 같이 協同組合을 營利企業의 一種으로 보는 여러 見解는 組合經營의 計算性과 經營 實體를 중시한 結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協同組合은 하나의 個別資本의 運動體로서 消費經濟體가 아니라 生産經濟體이고 資本主義 發展의 歷史的 產物로서 資本主義社會를 背景으로 存續 發展해야 하므로 資本主義的 市場經濟機構를 벗어나서 存在할 수 없으며 그 經營面에 있어서는 現實적으로 많은 資本主義的인 企業의 性質을 갖기 때문이다.

水産業協同組合은 個個 漁民의 單純한 個別的 集合體가 아니라 組織의 힘에 依하여 더 많은 利得을 얻겠다는 結合體로서 스스로 法人格을 가지고 能動的 行爲主體가 되며 同時에 資本計算의 單位로서 個別資本의 運動過程으로 展開되므로 組合經營이 組合員의 利害와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하여 水協 經營의 獨立性은 勿論 組合經營의 收益性이 否定될 수는 없는 것이다. 水産業協同組合은 國民經濟 乃至 社會經濟의 需要에 應하기 爲하여 水産業의 生産力發展과 組合員의 經濟的 慾求充足의 기초를 주며 이를 위하여 個別經濟로서 社會 制度의 構成體로서 機能하는 것이므로 全體經濟構造와 그 循環過程에서 볼 때 水産業 協同組合의 經濟的 機能은 資本主義的 經營體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⁹⁾

그는 資本計算의 主體는 獨立性이 前提가 된다고 하여 計算의 獨立性을 強調하고 資本計算의 目的은 營利에 있다고 한다.

2. 經營主體觀

近代 資本主義의 發達は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를 招來하게 되었으며 企業의 大資本化는 必然적으로 所有와 經營이 分離하게 되었다. 即 資本의 社會化와 더불어 企業이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서 存在하게 되고 그 支配關係에 있어서도 資本家的 支配 (capitalist control)에서 制度的 支配(Institutional control)로 移行하게 되어 그 所有構造에 있어서도 個人的 所有가 아니고 社會的 制度로¹⁾ 認識되는 것이다. 이러한 所有構造의 變化는 所有와 經營의 分離를 招來하게 되는데 이것은 첫째 企業이 이미 個人資本家的 私的 所有物이 아니고 社會적으로 制度化되고 둘째 個人 資本家的 人格的 支配가 아니고 會社에 對한 資本的 支配는 非人格化, 制度化되며, 셋째 特定한 支配的 集團이 없으므로 自然히 所有와 支配가 分離하게 되는 것이다.²⁾ 뿐만 아니라 企業은 하나의 「資本單位인 同時에 生産單

8) 日本國學院大學: 政經學報第 7卷, p15

9) 崔正統 碩士學位論文 「水産業協同組合의 收益性에 關한 考察」 p25

1) 裴應道著: 經營者論, 高大企業研究所, 1963, p52

2) 裴應道著: 前揭書 p53

水産業協同組合의 營利性에 關한 一考察

位요 組織單位」³⁾ 이므로 企業의 大資本化는 生産過程의 高度化, 機械化 및 組織化에 依해서 必然的으로 이루어 지며, 이러한 生産過程의 高度化 組織化는 專門의 管理者 및 經營者 集團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經營은 企業体制의 發展的 變化에 따라서 賦課된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對해서 制度化로 認識함으로써 具體化 되는 것이며 經營者는 經營에 投下된 資本의 增大만을 爲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最大의 關心事는 그가 擔當한 經營機能의 明確한 認識과 充實한 實行에 있게 되며 소위 資本과 經營의 分離는 다만 出資者 支配로 부터 經營者 支配로 移行된 事實을 意味하는데 그치지 않고 經營經濟發展과 함께 經營의 自立性이라는 새로운 事實을 提示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므로서 企業이 社會의 制度로서 認識되고「네-오-포디즘」(Neo-Fordism)에서 主張하는 바 企業이 奉仕의 機關으로 認識되므로 社會的 責任을 보다 重視하여 經營自體의 論理로서 存在함으로써 社會的 利益을 爲해서 活動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마스·더와인」(Thomas Devine)이 말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營利動機(the profit motive)가 企業 經營活動의 原動力이 되고 있다」⁴⁾ 고는 하지 마는 經營을 社會的 制度로 認識하는 限 「레-만」 R. M. Lehman이 말한 바와 같이 「人間은 결코 手段이여서는 아니되며 恒時 同時에 目的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經營에서 經營의 全 構成員은 單只 經營管理의 客體로서가 아니라 恒時 同時에 主體로서의 自覺을 갖고 있을 것」⁵⁾ 이 強調되는 것이며, 「콤몬스」(J. R. Commons)가 「經濟活動의 研究에서 우리는 人間意思(human-will-in-action)가 經營活動에서 中心的인 것이라 結論한다」⁶⁾ 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經營目標은 營利 以外에 全 經營 構成員의 生活을 幸福하게 해야 하고 社會的 責任을 完遂해야 하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여기에 經營이 社會的 制度로서 그 責任을 完遂하기 爲하여 그 自體의 論理에 依해서 經營活動이 遂行되고 維持發展되지 않으면 안될 所以가 있는 것이며, 經營이 「고-잉·컨선」(going concern)으로서 認識되는 限 經營主體(Business Entity)로서 認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點에 關해서 利潤原則을 中心으로 좀 더 考察해 보면 「企業活動의 原動力이 營利動機」라하는데 그 利潤의 歸屬關係에 있어서 利潤原則의 概念이 變質되고 있다. 即 所有와 經營의 分離에 依해서 企業이 出資者의 私的 財產이 아니라 하나의 社會的 制度가 되고 出資

3) 裴應道著:前掲書 p54

4) C. T. Devine: Cost accounting and analysis, p3 參照

5) R. M. Lehman: Betriebswirtschaftlehre als Sozialwissenschaft, Efh F. 1951. 5532 黃一清著: 經營學原論, 法文社, 1964, p20

6) J. R. Commons: Institutional Economics, p169

7) 裴應道:前掲書 p88

者와 別個의 客觀的 存在가 될 경우에 傳統的인 利潤原則은 그 意義를 喪失하게 되고 企業家利潤의 概念은 消滅되며 企業利潤의 概念이 생기게 되는데 企業利潤은 企業을 制度로서 維持하기 爲한 것이고 企業維持의 制度的 條件의 하나로서 意義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⁸⁾ 다시 말하면 企業利潤은 變動하는 市場經濟에서 企業을 維持하기 爲해서 機能하는 것이며 또한 企業은 항상 擴張을 爲한 追加資本을 要하므로 社內留保에 依해서 自己金融으로 機能하며 間接적으로 外部資本의 調達誘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所有와 經營이 分離된 오늘날의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經營者의 活動目的이 株主를 爲해서 最大 利潤을 追求하는데 있다는 利潤原則은 非論理的이며 오히려 企業을 制度로서 繼續적으로 維持하는 것이 企業目的이고 이 企業目的을 爲해서 經營者가 活動하는 環境的 條件中의 하나로서 利潤原則이 作用한다고 보는 것이 正當할 것이다」⁹⁾

이와 같이 利潤의 歸屬主體가 經營인 경우 出資者는 單只 equity (持分, 所有權)¹⁰⁾ 만을 가지고 利潤의 一部를 分配받는데 지나지 않고 企業은 企業所有者 또는 企業에 있어서의 個別的人間에 對하여 企業自體의 內的法則에 따라 運動하는 獨立的實在(independent entity)로서 獨立하게 되었다. 一旦 資本을 企業에 投下하면 資本主는 財產 自體에 對한 具體的인 所有權을 喪失하고 그 代身 企業 財產의 總體에 對한 equity라는 抽象的인 所有權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利潤의 歸屬關係에서 그 利潤의 歸屬主體가 經營인 경우 經營을 獨立된 經營主體로 볼 수 있겠는데 一般的 經營의 要件을 그 性質에서 부터 a. 主體性, b. 目的性, c. 財團性, d. 社團性, e. 計算性을 든다면 그 中에서 主體性和 計算性을 더욱더 本來的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水產業協同組合도 企業經營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經營 自體의 論理에 依해서 經營活動이 遂行되는 經營主體로 認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水產業協同組合經營은 個別資本의 運動過程으로 展開되는 能動的 行爲主體로서 그것이 하나의 生産單位 및 組織單位이

8) 利潤의 內容을 (1) 企業家利潤 (2) 資本利潤 (3) 企業利潤 (4) 附加價值(勞動利益)로 나누고 企業家利潤은 所有와 經營이 一致해 있을때 企業家에게 歸屬되는 利潤이며 企業利潤은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었을 때 企業이 制度로서 存在하므로 企業의 物的手段과 勞動力의 維持에 必要한 總原價를 超過하는 總收益의 部分으로 구성 된다.

9) 裴應道著: 前掲書 p72

10) equity라고 하는 것은 經濟上의 資本에 對應하는 法律上의 概念으로서 「페이톤」(Pat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equities may be defined as the equitable assignment or distribution of the total of the assets among the parties bassing rights there in which are subject to statement in monetary terms

by W. A. Paton; In Essentials of Accounting, p27. Equities are rights in assets, and hence without assets there can no effective equities, similiary, apart and values can hardly be conceived entirely apart and distinct from equities there in, Each conception connotes the other, (Ibid, p35)

11) 平井泰太郎 編 「經營學辭典」

水産業協同組合의 營利性에 關한 一考察

고 資本計算의 單位로서 資本家的 企業經營에 比해서 약간의 制約이 있기는 하나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고 出資者인 組合員 支配가 아니라 制度的 支配로서 特定人の 所有가 아닌 社會制度로서 認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水産業協同組合은 組合員의 經濟的 社會的地位 向上을 目的으로하는 自己 防圍의 組織이므로 이를 爲하여 對外的으로는, 變動하는 市場經濟에서 資本家的企業과 對等한 價格競爭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流通過程 合理化 機能에 依하여 商業利潤의 節約分을 自己利潤으로 追加하고, 또 때로는 수산업 協同組合의 기능이 生産過程에 까지 소급하여 產業利潤의 一部까지도 自己利潤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企業에서와 같이 最大 利潤의 追求에 依한 利益配當이 目的이 아니고 組合員이 組合을 利用케 함으로서 그들의 經濟的利得을 얻는 다고 하는 相互 利用 關係에 서게 되므로 組合經營에서 發生되는 收益은 水協經營 自体에 歸屬케 함으로서 水協 經營自体의 發展의 維持를 期할 수 있고, 보다 많은 經濟的 便益을 組合員에게 줄 수 있는 것이며 組合은 그 自体의 論理에 依해서 運營되므로서 組合 經營의 社會的 責任을 完遂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自体가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서 認識 해야 하는 論理가 成立하는 것이다. 即 組合은 流通過程에서 中間商人을 排除하고 價格支 配力을 높이므로서 組合員에게 公正競爭의 機會를 주고 餘他 有利한 條件을 賦與함과 同時 에 이때 節約되는 商業利潤을 組合自体에 歸屬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水協이 비록 組合員의 個別的 經濟的助成을 目的으로 出發했을지라도 一旦 成立하면 組合 財產의 個別的 所有가 認定되지 않을 뿐 아니라 協同組合組織의 一般化와 더불어 社會的富의 存在物로서 機能하 기 때문이며 組合이 組合經營에서 發生되는 收益을 組合員에게 配當하는 것 보다는 組合이 그 自体의 發展의 維持에 依해서 組合員에게 利用시키는 것이 보다 많은 利得을 組合員에게 주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며 「水産業 生産力 增強을 도모 함으로서 國民經濟의 均衡있 는 發展을 期함」(水産業協同組合法 第1條)으로서 水協의 궁극적인 社會的 責任을 完遂하 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水協은 그 自体가 經營維持를 爲한 社會制度로 서 意義를 가지며 經營自体가 法人格을 가지고 行爲主体가 되어 資本維持 및 危險負擔이 組合自身の 責任으로 되고, 生産單位 및 計算單位로 되며 또한 經濟的 非經濟的 諸事業을 擴張 發展시키므로서 組合員에게 經濟的 利益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組合經營이 獨立 된 實체로 存在하여 統一된 意思에 依한 自体의 論理로 움직일 수 없다 함은 非論理的이며 組合經營을 하나의 制度로서 계속적으로 維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비로소 여기 에 水協經營이 하나의 制度로서 個別資本의 運動체로 認識되며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고 獨立 된 經營單位로 認識하는 論理가 成立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水協經營이 하나의 經營主体가 되기 爲해서¹²⁾

12) 吳秉秀著;經營學, p36

- a. 單位의 長 下에 命令體系를 갖추고 繼續的 計劃的 秩序의 으로 事業을 總括할 수 있는 組織體여야 하고
- b. 經營財産과 負債가 明確하고 收支가 獨立의 으로 行해져서 損益의 發生을 認識할 수 있어야 하며
- c. 經營自體의 市場危險과 財務上의 危險이 發生하고 이것을 부담하는 獨立的 主體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水産業協同組合이 獨立된 經營主體로 存在하면 企業經營과 마찬가지로 「푸르러터윌·시어리」(Proprietorship theory)에 立脚한 經營에서 經營制度 自體에 對한 「츄라스티·윌」(Trusteeship)으로서 經營機能을 規定하게 되어 經營資本의 運用者 (Trustee)는 經營自體의 維持 發展을 企圖하는 것이 第1의 任務로 되었다. 美國의 會計學者 「페이톤」과 「리틀톤」(Paton & Littleton)은 經營을 經營利害關係集團과는 別個의 것으로서 그 自體 權利 義務의 主體로 되는 하나의 制度로 認定하여 企業會計 및 財務諸表는 所有나 其他 利害關係者를 爲한 것이 아니고 社會的 制度로서 獨立된 企業自體의 財産 및 經營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理論的 源泉은 企業의 社會性的 增大로서, 企業의 出發은 비록 個人의 投下資本에서 始作하였지만 한번 成立 出發한 企業體는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社會的 利益의 增進 機關으로 그 性格을 制度化 한다는 것이다. 이는 企業이 완전히 社會的 富로서의 存在物이지 個人 所有의 存在物에서 먼 企業의 性格으로 轉化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이렇게 水産業協同組合이 獨立된 經營主體로 明白히 認識될 때 水産業協同組合의 本質을 非營利 奉仕主義로 限定하는 것은 非論理的이며 극히 非現實的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水産業協同組合은 現實的, 制度的 으로 經營主體觀에 立脚해서 運營되므로서 營利性을 認定하고 있는 듯 하다.

水産業協同組合은 農業協同組合과 마찬가지로 法人格을 가지고 「自己의 이름으로」 「自己의 計算下에」 事業活動을 하므로 資本維持와 危險負擔은 當然히 組合의 責任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營利原則에 支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經營收益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고 剩餘金의 發生을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이다. 水協法 第141條 및 農協法 第66條에서는 每事業年度 剩餘金의 1/10 以上을 法定積立金으로서 定款의 定하는 金額에 達할 때 까지 積立하도록 強制規定을 두고 있고, 또 事業準備金의 積立도 規定하고 있어 事業擴張 및 經營危險에 對處할 剩餘金의 發生을 促進하고 있는데 이는 協同組合을 資本蓄積의 場所로 認識케 하고 있다. 水産業協同組合 財務基準 第1條 및 第2條에서는 自己資本에 對한 用語의 定義를 納入出資金, 諸積立金, 未處分利益剩餘金이라 하고, 自己資本의 基準을 固定資産의 價額과 納入出資金의 合計額 以上이라 規定하고 있다. 또 水協財務基準 施行日인 1962年

水産業協同組合의 營利性에 關한 一考察

4月 1日 現在로 自己資本이 不足한 水産業協同組合에 있어서는 組合은 20年 以內에 中央會는 10年 以內에 年次計劃으로 自己資本을 增加시켜야 한다고 規定하였는데 이는 資本制的 營利企業과 比較해서 自己資本의 定義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특히 그 基準을 固定資產의 價額과 納入出資金의 合計額 「以上」이라 規定 하고, 20年 以內에 自己資本을 增加시켜야 한다고 強制規定을 둔 것은 經濟的弱者인 零細한 獨立小生産者인 漁民을 組合員으로 한 것을 상기할때 組合의 營利經濟的 活動을 前提로 한 것이 分明하다. 또 水協財務基準 第3條 및 水協法 第149條의 規定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財務基準 第3條에서는 部門別 獨立採算制에 依한 損益計算을 行하도록 하여 資本計算을 하도록 하고 있고, 水協法 第149條에서는 每會計年度 經過後 2月 以內에 當該事業年度の 決算을 完了하고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作成하여 農林部長官에게 報告하고 貸借對照表를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商法典에 規定한 商人에 對해서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의 作成을 命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¹³⁾ 獨逸,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헝가리」 등 歐州諸國이 協同組合을 商法典 會社編에 規定하고 課稅 對象으로 하고 있음은 協同組合의 營利性을 認定하고 있는 結果이며 「로버트·오웬」 (R. Owen), 「샤를르·후리에」 (F. M. Ch. Fourier) 등 現實否定的인 空想的 協同組合運動이 大部分 失敗했으나 「윌헬름·하스」 (Wilhelm, Hass)의 營利主義的協同組合運動이나 「슐체·델리취」 (F. H. Schulze-Delitzsch) 등의 現實肯定的인 協同組合運動이 크게 成功하고 있다는 歷史的 事實은 크게 시사적이라 하겠다.

上述한 바와 같이 水産業協同組合이 制度的으로 營利性을 認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만일 水産業協同組合 經營에 營利性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그 投下資本이 現金→消費의 一方的 片道運動이므로 資本概念이 없고 損益計算의 必要가 없다. 例컨데 企業의 固定資產은 費用의 前拂로서 資產으로 남지만 非營利事業에서는 一旦 支出한 固定資產 買入資金은 다시 消費될 수 없으며 이 경우 固定資產은 企業에서와는 달리 貸借對照表上에 計上되지 않는다.¹⁴⁾ 支出은 단지 支出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本來 協同組合은 費用補償原理 또는 原價補償主義(Kostendeckungsprinzip)를 經營活動의 指導原則으로 삼는데 이 費用補償原理란 것도 日本의 「山城 章」교수에 依하면 營利經濟에 比較해서 반드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問題는 보상되는 비용의 內容에 있는 것이지만 經營生活上의 적정한 희생을 全部 原價로서 計算한다. 例를 들면 企業家賃金, 自己資本利子, 危險負擔料 등 利潤要素로 간주되는 것도 전부 費用的으로 取扱되어 소위 計

13) 商法 第4條·第32條·第33條·第501條 第502條 參照

14) 伏見章著:非營利法人의 複式簿記, p12

수 산 경 영 론 집

算利潤 (Kalkulationsgewinn)이 考慮되고 종래의 생각으로는 利潤인 것이 補償되는 것으로 되어 內容的으로는 거의 差異가 없다.¹⁵⁾

여하튼 水産業協同組合은 하나의 獨立된 經營主体이고 組合의 經營은 組合員의 經濟에서 分離 獨立하여 自立하고 組合 그 自体로 存在하며 그 自体의 資本의 運動으로서 展開되며 法律上에서도 水協은 法人格을 가지고 會計單位를 形成하며 損益計算의 主体가 되고 있으므로 「코-잉·컨선」(going concern)으로서 經營自体의 論理에 依해서 運營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整理하면 水産業協同組合은 1)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산물로서 組織의 힘에 依해서 보다 많은 利益을 추구하려는 人的結合체이나 그것이 하나의 個別資本의 運動過程으로 展開되는 限 獨立된 財産의 管理主体가 되며, 獨立된 計算單位 組織單位로써 行爲主体가 되어 多小間의 制約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經營自体의 論理에 依해서 計劃的 秩序의 秩序로 運營된다.

2) 目的 達成을 爲한 事業主体로서 그 自身이 스스로 法人格을 가지고 行爲能力과 意思能力을 가지며 「自己의 이름으로」 「自己의 計算下에」 事業 活動을 영위하므로 「資本維持」와 「危險負擔」이 組合 自身에 있으므로 經營主体로 볼 수 있다.

3) 費用保償主義에 立脚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補償되는 費用의 內容에 소위 計算利潤이 포함되므로 內容的으로 營利經濟와 거의 差異가 없다.

4) 現實的으로 봐서 水協이 制度的으로 營利性을 認定하고 있어 資本蓄積의 場所가 되고 있으며 그 會計年度에 있어서도 企業會計方式을 採用하여 資本計算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協同組合經營의 主体性, 獨立性, 計算性을 尊重하여 獨立된 經營主体로 認識하고 따라서 經營主体 存立의 環境的條件으로서 營利性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V. 結 言

지금까지의 考察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水産業協同組合이 共存共榮(each for all, all for each)이라고 하는 本來의 存立意義를 다 하기 爲해서는 하나의 獨立된 經營主体로서 存在하며 「코-잉·컨선」(going concern)으로 發展해야 하므로 經營의 對內的인 費用의 最小問題 뿐만 아니라 對外的인 收益의 最大問題에 까지도 關心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協同組合 經營의 「獨立的維持」를 爲해서는 經營의 存續要件인 對外的能率과 對內的能率 (External efficiency & Internal efficiency)의 확보가 前提가 되기 때문이다.¹⁾ 對外的能率은 勿論 技術的合理化를 包含하지만 經濟的觀點에서 보면 成果(給付)와 費用(消費)의

15) 平井太泰郎編;前掲書, p108

水産業協同組合의 營利性에 關한 一考察

比較値로서의 經濟性이 높아 지도록 고려된 것이며 이것은 적어도 費用을 補償해 충분한 收益을 획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歷史的 事實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現實不定的인 空想的協同組合運動이 모두 失敗로 돌아 간 反面 現實肯定的인 營利經濟的 協同組合이 크게 發展하였다는 事實이다.

結局 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은 그것이 처해 있는 社會 經濟的 背景을 無視한 超越的 存在로서는 存立할 수 없다. 協同組合이 그 機能에 스스로 限界性을 內包한 채로 資本主義 社會를 外圍로 成立 發展하는 것이며 獨立된 經營主体로서 「코잉·컨선」으로 認識함으로써 本來的 目的을 達成할 수 있으므로 協同組合經營이 資本主義的 經濟的 合理主義原則을 無視하고서는 發展할 수 없다. 協同組合 (水協)은 이제 C. Guide가 말하는 것 처럼 「利潤을 박멸하는 단체」라고 하는 本質이 退色된지 오래이고 協同組合 經營維持 또는 存續의 環境的 條件中의 하나로서 利潤原則이 作用하는 것이므로 協同組合 組織目的의 單純한 설명 만 으로서 協同組合의 營利性이 不定될 수는 없는 것 같다.

(浦項水專教授)

1) 黃一淸 著:前掲書p3~38, 參照